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March 27, 2025

삼성 KPMG TAX 6 본부는 이전가격 및 관세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글로벌 관세/국제 통합 자문팀을 운영하며 Operational TP, Micro Supply Chain Management, 실시간 국제 동향 모니터링을 포함, 기업의 관세 및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 종합적인 자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美 트럼프 대통령의 급변하는 관세 정책 동향을 긴급으로 분석하여 공유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행정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추가 관세 부과 발표 (2025년 3월 26일)

1. 개요

(25% 관세 부과) 美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3/26 일, 미국에 수입되는 아래 '2 가지 제품군'에 대해 '2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하였습니다.

- 자동차: 세단, 스포츠/크로스오버 유틸리티차량, 미니밴, 화물밴, 경트럭 등
- 자동차 부품: 엔진 및 엔진 부품, 변속기 및 파워트레인 부품, 전기 부품 등

(과세 대상 차등 적용) 금번 추가 관세는 제품군별로 상이하게 과세됩니다.

- 자동차
 - 'USMC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전체 수입가격에서 미국 내 생산된 가치분을 뺀 가격
 - 'USMCA 원산지 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수입물품 가격
- 자동차 부품: 수입물품 가격

(적용시기) 적용시기는 아래와 같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으로 개별로 언급하였습니다.

- 자동차: 2025년 4월 3일 오전 12시 1분(EDT) 이후 적용
- 자동차 부품: 연방관보에 명시된 날짜부터 적용(단, 2025년 5월 3일 이전이어야 함)

2. KPMG 의견

(미국법인의 손익 등에 대한 영향 분석 필요) 국내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사는 금번 '25%의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해, 한국 본사가 미국법인에게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거래 구조 관련해서는 미국법인에 더 많은 관세 부담이 발생할 것이고, 이는 **미국법인의 매출원가 증가로 인해 판매가격 상승, 판매수량 감소, 손익 감소 등 많은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내 제도 활용 검토 필요성) 미국에서는 CBP(관세국경보호청, 미국의 관세청)의 유권해석 등을 바탕으로 '이전가격에 대해 국세와 관세를 모두 고려한 방안' 및 '수입자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등에 따른 수입신고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PMG 는 미국 내 제도의 활용 등을 통해 고관세율의 추가 부과에 따른 한국 본사 및 미국법인의 손익 관련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 (이전가격 조정금액→수입물품 FOB단가 반영) 'APA합의에 따른 이익률' 또는 '물품 별 관리가능한 TP Policy'에 따라 이전가격 조정금액을 수입물품의 FOB단가에 반영 (인상/인하) 할 수 있는 방안
- (수입신고방법 - Reconciliation) 수입신고가격을 물품의 수입시점 당시의 가격이 아닌 수입 후 '최대 21개월 내' 확정된 가격으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는 제도

관세 부과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 관리, 이전가격 정책, 간접세 효과, 품목별 Operational TP 관리 등 다양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3. 포고령(Proclamation)

관련 포고령에 대한 개요(요약)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한 원문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Adjusting Imports of Automobiles and Automobile Parts Into the United States – The White House](#)

ADJUSTING IMPORTS OF AUTOMOBILES AND AUTOMOBILE PARTS INTO THE UNITED STATES (March 26, 2025, 이하, 포고령)에 관한 요약

구분		상세 설명	근거
과세요건	미충족 자동차	전체 수입가격	(1)
	USMCA 충족 자동차	전체 수입가격에서 미국 내 생산된 가치분을 뺀 가격 (non-U.S. content of the automobile - shall be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value of the U.S. content in an automobile from the total value of the automobile)	(2)

	자동차 부품	전체 수입가격	(1)
	과세물건	동 포고령 부록 I 또는 동 포고령에 대한 후속적인 연방관보 ¹ 에 명시될 모든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all imports of articles specified in Annex I to this proclamation or in any subsequent annex to this proclamation, as set out in a subsequent notice in the <i>Federal Register</i>) <i>* 2025년 3월 27일 오후 12시 기준, 부록 I 또는 동 포고령에 대한 후속적인 연방관보 발표되지 않음</i>	(1)
	관세율	추가적인 25%의 종가세 (25 percent ad valorem tariff)	(1)
적용시기	자동차 (automobile)	2025년 4월 3일 EDT 12:01 a.m. 이후에 소비를 위하여 반입(entered for consumption)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위하여 반출(withdrawn from warehouse for consumption)된 물품.	(1)
	자동차 부품 (automobile parts)	연방관보에 명시된 날짜 이후에 소비를 위하여 반입(entered for consumption)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위하여 반출(withdrawn from warehouse for consumption)된 물품. <i>* 2025년 3월 27일 오후 12시 기준, 명확한 날짜가 발표되지 않았으나, 2025년 5월 3일 이전이어야 함</i>	(1)
부과 방식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 수수료, 징수금, 요금에 추가 부과	(1)
기타 조항	자동차 전체 수입 가격 과세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자동차 U.S. content 의 과다계상으로 non-U.S. content 가 부정확하게 신고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전체 가치에 대해 25% 관세 부과 예정 (2025년 4월 3일 이후로 수입된 분에 대해 소급 적용도 가능)	(3)
	(USMCA 총족 '자동차 부품'에 대한) 적용 유예	USMCA 총족 '자동차 부품'에 대하여는 장관과 CBP 가 협의하여 non-U.S. content 에 대한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연방관보에 게재하기 전까지 적용 유예 - 단, 이는 부록 I 에 정의된 개별 부품에 대해서만 적용 (<i>2025년 3월 27일 오후 12시 기준 부록 I 은 미발표</i>), 자동차 조립 키트(knock-down kits) 또는 부품 컴파일(parts compilations)에 미적용	(4), (5)
	여하 환급 불허	본 명령에 따라 부과된 관세는 어떠한 환급도 허용되지 않음	(10)
	명령 우선 적용	본 명령의 지시에 상반되는 모든 이전 대통령 선언, 행정명령은 필요 한도 내에서 대체됨	(13)
조치 변경	국내산업 보호	미국 내 자동차 및 부품 생산자나 업계 대표자가 특정 물품의 수입이 안보를 위협하거나 동 포고령의 목표를 침해한다고 제안할 경우, 장관은 60 일 이내에 미국재무위원회, CBP 와 협의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함	(7)
	추가조치 제안	장관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수입 추이를 지켜보며 필요시 대통령에게 추가 조치를 제안하거나 추가적인 관세율 인상이 불필요하다고 제안할 수 있음	(9)

¹ Federal Register(연방 관보)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공식 문서로, 연방 정부 기관의 규정, 공지, 행정 명령 등을 포함합니다. Federal Register에 게재되는 문서는 크게 규칙(rule), 공지(notice), 제안된 규칙(proposed rule), 대통령 문서(presidential document)로 분류됩니다.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이영호 상무

T. 02-2112-6763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